

목회와신학연구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라 한다(영문표기 The Institute of Theological Stud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연구소'라 칭함).

제2조 (사무소)

본 연구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소의 목적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개혁신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변하는 시대 속에서 신학을 연구하며 한국 교회, 사회, 역사를 변혁시키는 역할을 하게하고 미래의 선교적 지평을 열고 준비하는 데 있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개혁신학의 전통을 소개하고 연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스위스 개혁신학을 비롯한 타 지역 교회들과 신학 교류와 인사 교류를 갖는다.
2. 개혁신학 신학자료를 조사, 수집, 정리, 보관한다.
3. 장로 신학 사상과 그 이후의 신학을 평가, 정리, 계승하고 발전시켜 복음의 토착화와 민족개혁의 동력이 되게 한다.
4. 에큐메니컬 신학 및 타 종교와의 대화를 가지며 개혁신학의 맥락에서 민중신학을 정리하고 발전시킨다.
5. 신학과 목회현장을 접목하기 위해 목회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6. 한국기독교장로회 연혁정책선언서(4대 문서)와 1987년 신앙선언, 교회선교사회 선교교회교육정책(제5문서) 및 각종 선교문서를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분석, 평가하고 2000년대 선교방향을 모색한다.
7. 연구 활동, 연구 발표회, 연구 세미나, 공개 강연회,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8. 연구 성과물 및 연구 자료집 등을 총회 출판사를 통해 출판 보급한다.
9. 장학회를 설치하여 새 역사를 담당할 개혁신학 후진을 양성한다.
10. 그밖에 연구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이사회)

본 연구소는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본 교단 인사 중에서 선임하되 총회 공천 29인(노회별 1인, 여성 1인 추가), 이사회 추천 이사 2인, 당연직 이사 2인(한신대 총장, 소장)을 포함하여 33인으로 한다. 그 임기는 4년이다.
2. 이사회의 추대로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명예이사는 이사회 연권을 가지며 연구소 운영과 연구 활동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 (임원 및 선임)

본 연구소 이사회의 임원 및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장 : 본회 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부이사장 : 본회 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다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서 기 : 부이사장과 같다.

제7조 (감사)

본회 감사는 총회 감사가 한다.

제8조 (소장 선출)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재직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임기는 4년이다.

제9조 (기획위원)

기획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0인 내외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임 무

제10조 (이사회회의 임무)

본 연구소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소장 선출
3. 기획위원 선출
4.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안 심의
5. 장학생 선발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장 :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부이사장 : 이사장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2조 (소장의 임무)

소장은 본 연구소를 관장하고 기획위원회를 주재하며 연구소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 (기획위원회의 임무)

동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연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2. 연구소의 연간 활동 계획의 심의 및 평가
3.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연구소

제14조 (직원)

본 연구소 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본 연구소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연구소를 총괄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상임연구원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연구원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3. 사무원

연구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약간의 사무원을 둔다. 소장이 임명하고 소장이 맡긴 업무를 담당한다.

4. 각종 부서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5장 회 원

제15조 (가입)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교회(단체)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 (구분)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연구회원은 연구소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연구소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다.

제17조 (후원회)

연구소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후원회원으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소에서 관장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9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총회 지원과 국내외 교회의 지원금과 찬조금, 출판 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7장 개정 절차

제20조 (개정)

이 정관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법규를 준용한다.

1991년 제76회 총회 실행위원회 제정
1992년 9월 제77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